

【 6 】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7. 4. .

제 출 자 : 양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개별 조례로 설치 운영중인 각종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설치토록 규정(안 제3조)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함.
- 나. 통합기금의 용도(안 제5조).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채상환,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등의 용도로 사용
- 다.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안 제6조).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위탁하여 자금운용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 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8조 내지 제1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성과분석, 예산 및 결산, 신설·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설치함.
- 마. 통합관리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7조).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함.

양주시 조례 제 호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주시 통합관리 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라 함은 회계 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부서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통합기금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1.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지방채상환, 특별회계·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등

제6조(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양주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 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개별 및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개별 및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개별 및 통합기금의 성과분석, 예산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신설·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부서의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공무원)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감사담당관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제17조(통합기금 운용 관리) ①운용관은 통합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각종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19조(기금의 존속기간)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10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구성된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기예탁 한 경우는 그 예탁 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로 한다.

②『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탁·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로 한다.

③『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하여 관리”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로 한다.

④『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예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로 한다.

⑤『양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예치”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하여야”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로 한다.

⑥ 『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예치·관리” 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 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를 “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로 한다.

소 관 실 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입 안 자	실·과장	기획감사담당관
	직위·성명	백 윤 기
	담당·팀장	예산담당
	직위·성명	신 대 수
	담 당 자	김 진 우
	성명·전화	820-2067

참 고 자 료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7664호 '06.1.1 시행】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0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본지침(행자부)>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도 통합관리기금 (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보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라 함은 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초자치단체, 타기관, 단체로부터 출연·예탁금
4. 관리기금 용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익금
5. 기타 수익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의 조성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4.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이 용자 및 관리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시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및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요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통합기금 예산 및 결산보고서
4. 예탁금 및 용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부지사)이 되고 그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관리실장, 본부국장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결산) ① 시(도)지사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관리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0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은 도지사가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도의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 조례

제정 2006. 5. 22 조례 제23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기금운용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신설·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부서의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성과분석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보궐위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금운용담당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안건의 검토결과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등에 출석한 공무원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제외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제한) ①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결과를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7조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용)** ①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③조합은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협력기금의 용도) 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地方債)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豫置金)의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19조 (협력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기금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협력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제20조 (협력기금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조합은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정법」에 의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조합은 협력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

- 가. 수입계획액
- 나. 징수결정액
- 다. 수납액
- 라. 불납결손액
- 마. 미수납액

2. 지출

- 가. 지출계획액
- 나. 전년도 이월액
- 다. 지출계획현액
- 라. 지출액
- 마. 다음 연도 이월액
- 바. 불용액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

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지역발전협력기금의 재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자금(이하 “협력기금예치금”이라 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지방채 발행수입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5. 그 밖에 협력기금의 운용수익

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기관)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② 조합이 협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협력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협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협력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협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에 용자할 수 있으며, 용자를 받은 자는 용자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이 용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용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협력기금예치금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협력기금예치금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협력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협력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협력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협력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